

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801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6. 8. 21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- 산업지원센터로 격하된 이후 축소된 지역 산업정책의 기획·전략 수립 기능을 회복·강화하기 위하여 기관 명칭을 「김포산업진흥원」으로 환원함으로써, 이를 통해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외 신인도를 높여 관내 중소·벤처기업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및 명칭 변경

- 「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」를 「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」로 변경함
- 「김포산업지원센터」를 「김포산업진흥원」으로 변경함

나. 근거 법령 정비

- 실제 법인 설립근거와 부합하지 않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인용을 삭제함(안 제1조)

다.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을 명시(안 부칙)

라. 그 밖의 용어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나.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: 붙임

다. 예산조치 : 2027년 본예산 편성 예정(비용추계서 별첨)

라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6. 7. 22. ~ 8. 11.(20일)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부서협의결과

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 없음

나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다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
가) 중앙부처 :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

나) 경 기 도 : 공공기관담당관

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”를 “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김포산업지원센터”를 “김포산업진흥원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”를 “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김포산업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”를 “김포산업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센터”를 “진흥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센터는”을 “진흥원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“센터”를 “진흥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센터는”을 “진흥원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2호 중 “센터”를 각각 “진흥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센터는”을 “진흥원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센터에는”을 “진흥원에는”으로, “센터장”을 “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센터장·이사”를 “원장·이사”로, “임기와 임면”을 “임면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센터장”을 “원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센터”를 “진흥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센터장”을 “원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센터장 및 감사)”를 “(원장 및 감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센터”를 “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, 진흥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센터”를 “진흥원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1항) 중 “센터의”를 “진흥원의”로, “센터장”을 “원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센터의”를 “진흥원의”로, “센터에”를 “진흥원에”로 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“센터”를 각각 “진흥원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센터”를 “진흥원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센터”를 “진흥원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센터”를 “진흥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센터는”을 각각 “진흥원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임원·직원”을 “임직원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센터가”를 “진흥원이”로, “센터에”를 “진흥원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김포산업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김포산업진흥원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김포산업지원센터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김포산업진흥원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김포산업지원센터의 명의로 행한 행위,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김포산업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.

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,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김포산업지원센터의 명의를 김포산업진흥원의 명의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 중 “김포산업지원센터장”을 “김포산업진흥원장”으로 한다.

소관부서		기업지원과
입 안 자	담당관·과장·소장 직위·성명	기업지원과장 조 문 순
	팀장 직위·성명	기업SOS팀장 김 지 연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주사보 이 우 철(☎2287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</u>		<u>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</u>		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김포시 중소·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<u>김포산업지원센터</u> 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----- ----- ----- ----- <u>김포산업진흥원</u> ----- ----- --.	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제2조(정의) ----- -----.		
1. “중소·벤처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김포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.		1. ----- ----- --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----- ----- -----.		
2. (생 략)		2. (현행과 같음)		
제3조(설립) ① <u>김포산업지원센터</u> 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		제3조(설립) ① <u>김포산업진흥원</u> (이하 “진흥원”이)----- -----.		
②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다.		② ----- <u>진흥원</u> ----- -----.		

제4조(사업)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~ 8. (생략)

9.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5조(정관) 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~ 11. (생략)

12.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(임원) ① 센터에는 이사장 및 센터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.

② (생략)

③ 센터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④ 센터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제7조(이사회) ① 센터의 사업수행에

제4조(사업) ① 진흥원은 -----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----- 진흥원-----

② 진흥원은 -----

-----.

제5조(정관) ① 진흥원-----
-----.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12. ----- 진흥원 -----

② 진흥원은 -----

-----.

제6조(임원) ① 진흥원에는 ----- 원장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원장·이사 ----- 임면-----
-----.

④ 원장-----
-----.

제7조(이사회) ① 진흥원-----

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의 회무를 총괄 하며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③ (생략)

제8조(센터장 및 감사)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센터의 업무를 총괄 한다.

② 감사는 센터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9조(직원) ① 센터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센터장이 임명한다.

제10조(출연금) 시장은 센터의 설립·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출연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재원 등) 센터의 설립·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센터의 자체사업 수익금

5. (생략)

제12조(업무의 위탁) 시장은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

-----.

② -----

원장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원장 및 감사)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, 진흥원-----
-----.

② ----- 진흥원-----

-----.

제9조(직원) 진흥원의 -----
----- 원장-----.

제10조(출연금) ----- 진흥원의 -----

진흥원에 -----.

제11조(운영재원 등) 진흥원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진흥원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업무의 위탁) -----

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에 지원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의한다.

제13조(시설물의 관리위탁) 시장은 공유재산 중 중소·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4조(감독 등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보고·검사 및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.

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(생략)
2. 임원·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

3. (생략)

제15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----- 진홍원 -----

-----.

제13조(시설물의 관리위탁) -----

----- 진홍원 -----
-----.

제14조(감독 등) ① -----
----- 진홍원 -----

-----.

② 진홍원은 -----

-----.

③ 진홍원은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임직원 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공무원의 파견) ----- 진홍원이 -----

----- 진홍원에 -----
-----.

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김포시 중소·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김포산업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4.3.27.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24.3.27.>

1. “중소·벤처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김포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.
2. “전략산업”이란 시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의 발굴·육성을 위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.

제3조(설립) ① 김포산업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<개정 2024.3.27.>

②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다.<개정 2024.3.27.>

제4조(사업)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개정 2024.3.27.>

1.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기획 및 조사, 연구
2. 중장기 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
3.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
4. 기업 경영·기술·정보 지원
5. 인력·자금·판로·애로사항 상담 등 종합 지원
6.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
7. 공동마케팅 프로그램 개발, 추진
8.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임·위탁 사업 등
9.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<개정 2024.3.27.>

제5조(정관) 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3.27.>
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
5. 이사 및 감사의 정수·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
6.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
7.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
8. 직원에 관한 사항
9.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
10. 사업에 관한 사항
1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12.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24.3.27.>

제6조(임원) ① 센터에는 이사장 및 센터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.<개정 2024.3.27.>

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.

③ 센터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<개정 2024.3.27.>

④ 센터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<개정 2024.3.27.>

제7조(이사회) ① 센터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<개정 2024.3.27.>

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총괄하며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<개정 2024.3.27.>

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센터장 및 감사)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<개정 2024.3.27.>

② 감사는 센터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<개정 2024.3.27.>

[제목개정 2024.3.27.]

제9조(직원) ① 센터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센터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4.3.27.>

제10조(출연금) 시장은 센터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출연할 수 있다.<개정 2024.3.27.>

제11조(운영재원 등) 센터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개정 2024.3.27.>

1. 시의 출연재산 및 출연금
2.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금
3.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익금

- 4. 센터의 자체사업 수익금
- 5. 그 밖의 수입

제12조(업무의 위탁) 시장은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에 지원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의한다.<개정 2024.3.27.>

제13조(시설물의 관리위탁) 시장은 공유재산 중 중소·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<개정 2024.3.27.>

제14조(감독 등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24.3.27.>

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보고·검사 및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3.27.>

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개정 2024.3.27.>

- 1. 조직·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- 2. 임원·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내부 규정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5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<개정 2024.3.27.>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기관 명칭에 따른 CI 등 변경

다.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(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)

- 「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0조제2항제1호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)

※ 총 예산 : 10,000천원 (CI 제작 5,500천원 + 홍보비 등 4,500천원)

2. 비용추계 : 미작성

3.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

- 해당없음

4. 작성자 : 경제국 기업지원과 과장 조문순 기업SOS팀장 김지연